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4차 전문가포럼

주권과 인권, 서방의 리비아 개입의 딜레마

-인도적 개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가능한가-

- 일시 | 2011년 4월 6일 (수)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02-581-0581)

● 프로그램 ●

14:00	개 회	
	사 회	고경빈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대우교수
14:10	발 표 1	유엔의 선택, 주권보장과 인도적 개입의 접점 김학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14:30	발 표 2	중동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국제사회의 역할 -리비아 사태의 근본적 배경-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14:50	전체토론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김중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양순창 대구외국어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15:05	질의응답	
15:25	휴 식	
15:40	전체토론	
16:50	닫는말	
17:00	폐 회	

● 차례 ●

03 발 표 1 유엔의 선택, 주권보장과 인도적 개입의 접점

김학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25 발 표 2 중동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국제사회의 역할

-리비아 사태의 근본적 배경-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서방 연합군의 군사 작전 개시 이후, 리비아 사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민보호책임’ 개념을 근거로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엄연한 주권국에 대한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리비아사태의 근본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인도적 개입의 기준은 무엇이며 국제적 합의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권보장’이나 ‘인도적 개입’이라는 국제사회의 고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2011년 3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4차 전문가포럼

주권과 인권, 서방의 리비아 개입의 딜레마

-인도적 개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가능한가-

퍼넬날 2011년 4월 6일 | 퍼넬곳 (재) 평화재단 | (우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 서초이오빌 2층
전 화 02-6925-0581 | 전 송 02-581-4077 | ptyuzi@peacefoundation.or.kr | www.peacefoundation.or.kr

유엔의 선택, 주권보장과 인도적 개입의 접점

김학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1. 서론

- 유엔(United Nations)은 국가 간 또는 지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폭넓은 책무를 위임받은 범세계적 기관(Universal Organization)으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분쟁해결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¹⁾
-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총장 등과 같은 정치적 기관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기관 및 지역기구 등은 유엔체제(UN System)의 하위체제로서 국제분쟁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유엔 스스로 자신이 다루어야 할 범주를 제20차 유엔총회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① 침략행위로 인한 인접국가 간의 다툼, ②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력공격, ③ 외국군의 주둔문제, ④ 조약의 위반, ⑤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의 이행문제, ⑥ 영토문제, ⑦ 인권 침해문제, ⑧ 국내정치문제, ⑨ 신생독립국 문제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1) 마가렛 칸스·카렌 밉스트 (김계동 외 옮김), 2007. 『국제기구의 이해-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 명인문화사. 125-126쪽. LeRoy Bennett·James Oliver, 200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7eds). NJ: Prentice Hill. 2-4쪽.

- 유엔은 역사적으로 분쟁을 단순히 법적 해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반 관련사항을 고려하고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선호해 왔음.
- 그 결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기관보다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총장 등과 같은 정치적 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었음.
- 정치적 해법의 강조는 엄격한 법적 판단보다는 사안별(case by case)로 위임명령(mandate)을 통해 문제를 대처하도록 만들.
 - 이러한 접근은 유엔 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면서 유엔이 오늘날까지 소멸하지 않고 발전하여 오게 된 원동력이었음.
 - 반면 이러한 접근은 불가피하게 많은 논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주권보호와 국제사회의 개입’도 주용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 본 글은 주권보호와 국제사회의 개입과 관련된 유엔에서의 논의현황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유엔의 리비아 사태 개입의 논리와 문제점을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1) 유엔의 설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 성문법인 유엔 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원칙과 방법 및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2) 유엔 설립 이후 유엔활동과정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해온 분쟁해결의 원칙과 방법 및 적용사례에 대해 분석하며, 3)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개입의 논리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함.

2. 유엔 헌장과 분쟁해결

- 유엔 헌장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이를 수행할 조직 및 이들의 기능과 관계 등을 담고 있는데, 헌장 상에 명문화된 조항들은 유엔의 모든 결정이나 활동에 기초가 되고, 모든 해석이나 조치들에 우선해서 효력을 지님.
- 물론 유엔 헌장에서 제시하는 접근방법을 뛰어 넘는 방법들이 유엔활동과정에서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그것들 또한 유엔 헌장이 제시하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4 평화재단 제44차 전문가포럼

않아야 함.

□ 유엔 헌장에는 분쟁해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분쟁해결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유엔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하는 것이고(헌장 1장 1조)
- 2) 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헌장 2조 1항-주권평등의 원칙)
- ② 모든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헌장 2조 3항- 평화적 해결의 원칙)
- ③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유엔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무력을 갖고 위협하거나,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헌장 2조 4항-무력불사용의 원칙)
- ④ 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느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주지 않으며, 또 그러한 사항을 본 헌장 하에 기초하여 해결하도록 회원국에 대하여 요구하지도 않음, 단 이 조항은 헌장 제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님(헌장 2조 7항-내정불간섭의 원칙).

□ 이러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헌장은 분쟁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헌장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제14장(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은 헌장 제7장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헌장 7장의 규정으로는 평화의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제39조)과 후속 조치들(제40조, 41조, 42조)이 있는 바, 내정불간섭 원칙의 예외는 해당 사태가 국제평화를 위협, 파괴하거나 타국을 침략했을 경우라 할 것임.

- 또한 무력불사용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헌장 7장의 규정으로는 제51조에 각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무력을 사용했을 경우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유엔에서의 분쟁해결은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무력불사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접근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음.

- ① 우선 관련 당사국 주도로 평화적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유엔은 이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 ②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사국의 동의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부탁하여, 국제법에 기초한 관련 당사국 주장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판결하여 사안에 대한 확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 ③ 만약 사안의 심각성이 국제평화유지와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엔은 당사국의 동의와 무관하게 평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유엔 헌장과 유엔의 분쟁원칙과 특징

원칙	유엔헌장	수단	특징
평화적 해결, 무력불사용	헌장 제1,2장 헌장 제6장	평화조성 (Peace-making)	당사국 주도적 역할/ 유엔 보완적 역할
평화적 해결, 무력불사용	헌장 제1,2장 헌장 제14장	재판	당사국 동의로 구성/ 국제법에 기초한 판결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는 무력행사	헌장 제1,2장 헌장 제7장	평화강제 (Peace-enforcement)	유엔의 독자적 결정/ 당사국 동의 불필요

□ 따라서 유엔이 국내문제(구체적으로 내전)에 개입하는 경우 헌장 상 규정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해당 사태가 국제평화를 위협, 파괴하거나 침략행위가 존재하는가 여부로 입증됨.

3. 활동과정에서 창안된 유엔의 분쟁해결 원칙

- 유엔은 창립 이후 활동과정에서 유엔 설립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직면하게 되고, 이에 조응하여 유엔 활동가들은 새로운 원칙을 개발·적용해 왔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탈식민화와 인도적 개입의 문제임.

3-1. 탈식민화

- 탈식민화 문제는 유엔 설립 당시에는 국제문제이자 국내문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특한 사안으로 이는 유엔 창립 당시부터 주요한 이슈였음.
- 유엔 창립자들도 사안의 이러한 성격에 따라 식민지배를 완전히 불법으로 하지 못하고, 헌장 제11장, 12장, 13장에 비자치지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음.
 - 제11장(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은 충분한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 지역들을 통치하는 유엔회원국이 그 지역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지역민들의 복지를 최대한 촉진하는 것을 신성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2장(국제신탁통치제도)에서는 신탁통치지역을 통치할 국가들과 개별협정을 통해 신탁통치의 감독을 위한 신탁통치제도를 설립과 적용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장(신탁통치이사회)에서는 신탁통치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헌장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신탁통치이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헌장 상에 나타난 규정들은 설립 당시 통치국과 비통치국의 주장이 타협된 결과로 민족자결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었음.²⁾
- 유엔은 식민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의 독립 열망에 부응하는 한편 그들이 조기에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음³⁾

2) 박치영, 1998. 『유엔정치론』, 법문사. 112쪽.

- 우선, 유엔은 1960년 총회는 결의 1514(XV) ‘식민지국가 및 국민들에 대한 독립부여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을 채택하였는데, 유엔 헌장의 개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선언으로 식민지를 소유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음.
 - 이 선언은 “식민지 주민들이 안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로이 표현한 의지와 여망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나 유보도 없이 모든 권력을 그 지역 국민들에게 이양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식민지를 부당한 것을 만들었음.
 - 이후 총회는 이 선언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기 위해 24개국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통치국과 비통치국이 각각 반씩 대표하는 기존의 헌장의 상의 제도는 달리 이 선언에 능동적인 국가들로만 구성하였음.
- 그 후 총회는 이 선언의 채택을 기념하고 이 선언에 부여한 임무를 환기시키기 위해 특별 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왔음
 - 특히 1988년 총회는 이 선언의 30주년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1990-2000년대를 ‘식민주의 근절을 위한 국제 10년대’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로 선포하는 총회 결의 43/47호를 채택함.
 - 2001년도에는 21세기를 식민주의가 없는 세계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총회 결의 55/146 ‘제2의 식민주의 근절을 위한 국제 10년대’ (Second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를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⁴⁾
- 식민지역이 독립국가가 된다는 것은 곧바로 영토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엔 총회는 식민지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음

3) 유엔 창설 이후 과거 식민지배 하에 있던 80여 개국이 주권독립국으로서 유엔에 가입하였음. 유엔 창립 당시 세계 인구의 1/3이 식민지배 하에 있었으나 이제는 세계 인구의 0.2%만이 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4) <http://www.un.org/Depts/dpi/decolonization/history.htm>

- 1946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압박하여 1990년 나미비아가 독립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총회는 단순한 제3자의 지위가 아닌 준당사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⁵⁾
 - 1982년 발생한 포클랜드 사태에 있어서도 비록 분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총회는 탈식민화의 입장에 서서 영국에 맞선 아르헨티나를 지지하는 결의(1965년, 1973년, 1976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를 지속적으로 채택하였음.
- 유엔의 탈식민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탁통치위원회는 1994년 팔라우의 독립을 끝으로 활동을 정지한 상태임<표2 참조>.
-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는 헌장 제13장(신탁통치이사회)의 삭제를 권고하였음.
 - 반면, 서부사하라의 경우 아직까지 독립이 완성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유엔의 지지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규모의 감시단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음.

<표 2> 총회 결의 1514(XV) 채택이후 독립을 성취한 국가⁶⁾

국가	유엔가입 일자	국가 또는 기타 실체	유엔가입 일자
아프리카		싱가포르	1965. 9. 21.
알제리	1962. 10. 8.	카리브	
앙골라	1976. 12. 1.	안티구아 바뷰다	1981. 11. 11.
보츠와나	1966. 10. 17.	바하마	1973. 9. 18.
브룬디	1962. 9. 18.	바베이도스	1966. 12. 9.
까뽀베르데	1975. 9. 16.	벨리제	1981. 9. 25.
코모로	1975. 11. 12.	도미니카	1978. 12. 18.
지부티	1977. 9. 20.	그라나다	1974. 12. 17.
적도기니	1968. 11. 12.	가이아나	1962. 9. 18.
감비아	1965. 9. 21.	자마이카	1962. 9. 18.
기니-비소	1974. 9. 17.	세인트 크리스토퍼 테비스	1983. 9. 23.
케냐	1963. 12. 16.	세인트 루시아	1979. 9. 18.

5) 신탁통치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엔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일 주체였음.

6) 유엔한국협회, 1996. 『유엔이란 무엇인가』, 유엔한국협회. 273-174쪽 참조.

국가	유엔가입 일자	국가 또는 기타 실체	유엔가입 일자
레소토	1966. 10. 17.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1980. 9. 16.
말라위	1964. 12. 1.	수리남	1975. 12. 4.
모리셔스	1968. 4. 24	트리니다드 토바고	1962. 9. 18.
모잠비크	1975. 9. 16.	유럽	
나미비아	1990. 4. 23.	몰타	1964. 12. 1.
르완다	1962. 9. 18.	태평양	
상투메프린시페	1975. 9. 26.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1991. 9. 17.
세이셸	1976. 9. 21.	훗지	1970. 10. 13.
시에라리온	1961. 9. 27.	키리바시	-
스와질랜드	1968. 9. 24.	마셜군도	1991. 9. 17.
우간다	1962. 10. 25.	나우루	-
탄자니아	1961. 12. 14.	파푸아 뉴기니	1975. 10. 10.
잠비아	1964. 12. 1.	팔라우	1994. 12. 15.
짐바브웨	1980. 4. 18.	사모아	1976. 12. 15.
아시아		솔로몬 군도	1978. 9. 19.
브루나이	1984. 9. 21.	투발루	-
예멘	1967. 12. 14.	바누아투	1981. 9. 15.
오만	1971. 10. 7.		

- 표시는 독립은 하였지만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임.

3-2. 인도적 개입

□ 유엔 창립자들이 유엔 헌장에 그 중요성이 비추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인권 및 인도주의에 관한 것임

○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의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채택을 시작으로 인권문제는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로 자리매김되어 왔음.

○ 인도주의에 대한 인식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는바, 특히 무력분쟁으로 인한 희생자의 보호는 무력분쟁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음.

-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은 비록 국제적 무력분쟁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었지만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전투방법 및 수단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적 개입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될 경우로서 이 경우 주권보호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임.
-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무력분쟁은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비국제적 무력분쟁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임.
 - 더불어 비국제적 무력분쟁은 빈번한 발생에 못지않게 희생자 또한 막대하여 무력분쟁의 희생자 중 약 80%가 비국제적 무력분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임.⁷⁾
 - 캄보디아 내전 220만, 방글라데시 내전 150만, 바이프라공화국(나이지리아) 내전 110만, 우간다 내전 90만, 수단 내전 70만, 에티오피아 내전 60만, 르완다 내전 200만 등의 인명피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전개에 따라 국제적십자사(ICRC)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제네바협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도적 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1974년 개시된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는 4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77년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제2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음.
- 유엔에서도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수적 증가, 장기간의 지속, 희생자수의 증가, 전투방법과 수단의 잔혹화, 국제전으로의 비화 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그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왔음.
- 유엔은 소말리아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내전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 제 7장을 발동하여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무기 및 군사장비의 수출금지를 결의(안보리 결의 733)하였고, 더나가 인도적 구

7) DeSchutter and DeWyngaet, 1982. *Coping with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 Borderline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13 Ga. J. Int'l & Comp. L. p.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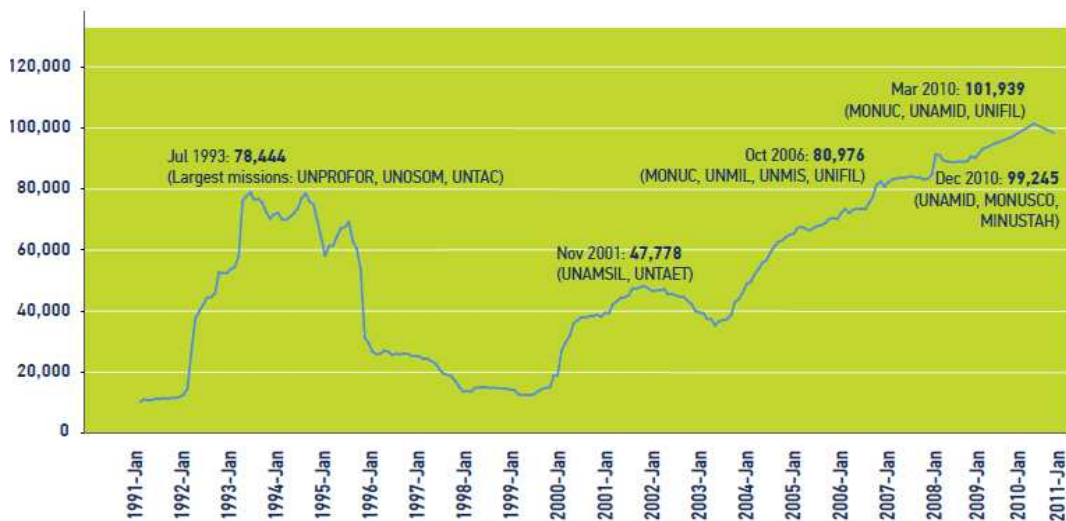
호활동에 참가하는 국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권한을 부여’(안보리 결의 794)하기 가지 하였음.

- 소말리아의 사태 이후 르완다, 전 유고연방 등의 사태에도 같은 이유로 유엔이 개입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고, 대부분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퇴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였음<그림 1 참조>.

- 소말리아는 과잉개입이 문제가 되었고, 르완다는 과소개입(무관심)이 문제였으며, 전 유고연방은 일관되지 못한 개입의 목적과 원칙(정확한 위임명령의 부재)이 문제가 되었음.

<그림 1>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참여인원 추이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엔은 인도적 개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접근을 모색하였는바, 안전보장이사회의 PoC (protect of civilians) 원칙과 총회의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이 그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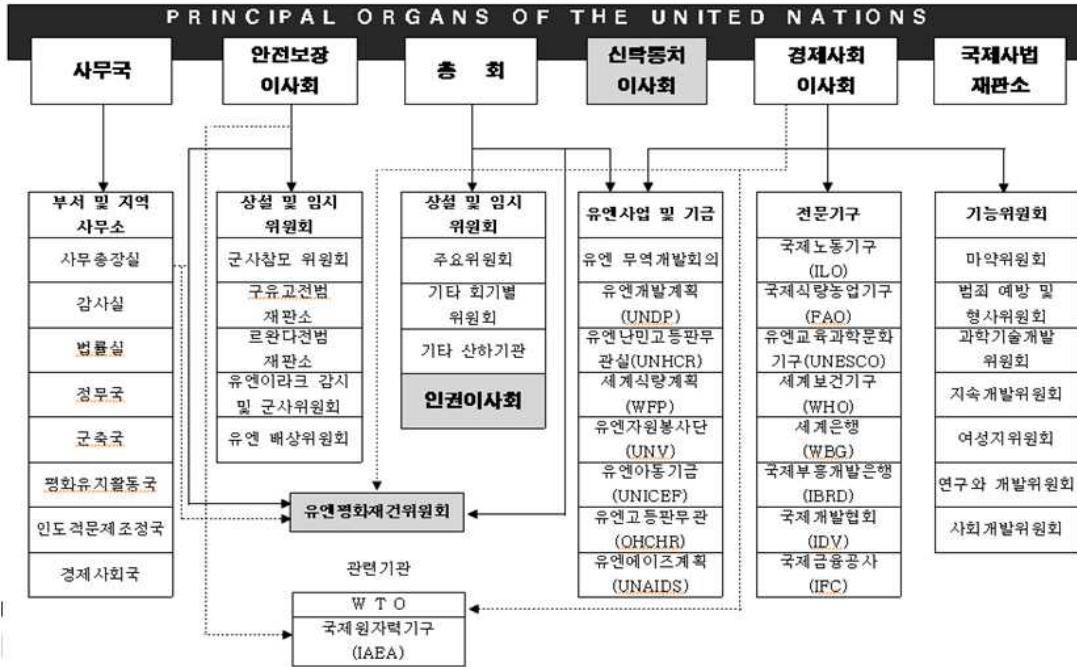
○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PoC가 분쟁의 모든 당사자의 권리(rights)이자 책임(responsibility)임을 인식하고,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위임명령(mandate)하여 왔음.

-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결의 1265(1999), 1296(2000), 1674(2006), 1706(2006), 1894(2009) 등 일련의 결의를 통해 PoC의 현실가능한 적용을 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모색하는 등 유엔의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여 왔음.
- 유엔 총회는 ‘개입과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R2P 개념을 유엔의 활동 원칙으로 채택하였음(유엔 세계정상회의 결의문, para 138-140, 2005)
- 캐나다 정부의 지원 아래 자발적 설립된 민간위원회인 ICISS는 2001년 ‘보호책임’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는바,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심지어 폭력을 자행할 때, 처음에는 외교적 수단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비군사적 강제조치로, 마지막으로 군사적 강압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안전보장이사회의 PoC가 보다 포괄적으로 모든 분쟁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R2P는 정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970(2011년), 1973(2011년)은 R2P에 기초하여 리비아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임을 규정하고, 현장 제7장을 발동하여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라 할 수 있음.
- 더불어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위기를 야기하는 사람(집단)은 국제적인 형사재판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서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를 더욱 엄격히 하여 왔음.
- 1993년 유엔 안보리결의 827에 근거한 구유고 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 안보리 결의 935(1994년)에 근거한 르완다 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안보리 결의 1315(2000년)에 근거하여 유엔과 시에라 레온 정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시에라 레온 특별재판소(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 2007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최근 리비아를 비롯한 6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에 있음.

□ 유엔은 현재 유엔 헌장에 명확히 규정된 원칙과 더불어 유엔 활동과정에서 발전되어온 원칙들을 유엔의 행위 규범에 모두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유엔 체제의 변화에서도 감지할 수 있음 <그림 2 참조>.

유엔체제 (The United Nations System)



4.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 논리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안보리 결의 1970과 1973에 나와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1. 유엔 안보리결의 1970

- 1) 직급의 리비아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은 인도주의 반하는 범죄가 되며(para 6)
- 2) 국민호보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고(para 9)

- 3)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부탁)하며(para 12)
- 4) 리비아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사회통합에 대한 강한 확약을 하며(para 14)
- 5)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안보리의 1차적 책임을 새기며(para 15)
- 6) 현장 제7장 41조(비군사적 강제조치)에 기반하여 ① ICC에 회부, ② 무기금수, ③ 여행 금지, ④ 자산동결 조치를 취함.

4-2. 유엔 안보리결의 1973

- 1) 국민호보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para 4)
- 2) 안보리결의 1738(2006년)에 나와 있는 국제인도법의 의무를 리비아 정부가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para 6)
- 3) 작금의 리비아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은 인도주의 반하는 범죄가 되며(para 7)
- 4) 리비아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사회통합에 대한 강하게 확약을 하며(para 20)
- 5) 리비아의 현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존재함을 결정하고(para 21)
- 6) 현장 제7장에 근거하여 ① PoC(국민호보), ② 비행금지구역, ③ 무기금수의 강제, ④ 리비아 국적기에 대한 비행금지 ⑤ 자산동결 조치를 취함.

* PoC 조항의 핵심 내용: 리비아 영토, 어떠한 곳에도 어떠한 형태의 외국군 주둔을 배제하는 조건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all necessary measures)을 활용할 것을 회원국에 권한 위임함.

- 따라서 지상군의 투입은 현재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 볼 때 불가능한 것임(새로운 결의가 필요함).

5. 토론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의 의의와 문제점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의 의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개념인 국민보호(R2P)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임.

○ 그러나 이는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이미 확립된 원칙인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됨.

○ 특히 리비아 사태가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성격의 기존의 인도적 개입의 관행을 뛰어 넘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논쟁을 야기할 것임.

* 과연 리비아 사태가 유엔 헌장 7장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의 존재를 구성하는가?

□ 일반적으로 유엔은 기존의 확립된 원칙을 뛰어 넘는 새로운 원칙을 개발 적용하려 경향이 존재함.

○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유엔 활동가들은 유엔 체제는 진화하여 왔으며, 이는 활동과정에 발전된 새로운 원칙의 창조적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평화유지활동을 들 수 있는바 헌장 규정 어디에도 없는, 활동과정에 생성되고 발전되어온 대표적 사례로서 현재 어떠한 유엔 활동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성공 사례임.

-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은 유엔 활동가로 하여금 유엔 체제의 진화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견지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음.

○ 구조적인 문제로서 유엔은 국가 간의 연합체로서 유엔이 생산하고 실행하는 규범은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범세계적 규범이 되며 이는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으로 국가 주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함.

- 유엔 세계인권선언, ILO의 국제적 노동기준, 유엔인간환경선언 등은 모두 국가 주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함.

○ 반면 유엔은 회원국가(특히 거부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의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바, 유엔의 이름으로 강대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관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는 불가피하게 이중잣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원칙의 개발과 적용이 항상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없음.

○ 문제는 새로운 원칙의 적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칙의 성공적 적용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임.

- 소말리아, 르완다, 구 유고연방에서의 실패는 유엔 활동 전반의 퇴조를 야기하였음.
- 이는 부트로스 갈리 당시 사무총장이 연임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함.
- 리비아 사태에 관한 안보리의 결의 1973은 새로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유엔 체제의 전면적인 역량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임명령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 PoC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지상군의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바, 이러한 수단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PoC를 수행하는 기존의 모든 유엔 활동은 지상병력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유엔 활동에 있어서 ‘주권보호 원칙과 인도적 개입의 원칙 사이에 어떠한 원칙이 우위에 있는가’ 라는 논의는 무의미함.
-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이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이는 인도적 개입의 성공 조건에 대한 연구를 요구함.
 - 현재 PoC를 수행하는 유엔 활동은 대부분 평화유지활동을 통하여 실천되고 있는바, 유엔 스스로가 밝힌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공 조건은 ① 당사자의 동의(Consent of the parties), ② 중립성(Impartiality), ③ 자위 혹은 위임명령 수행을 제외한 무력의 불사용(Non-use of force in self-defence and defence of the mandate)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성공 조건으로는 ④ 합법성(Legitimacy), ⑤ 신뢰성(Credibility), ⑥ 국가적 혹은 지방적 수준의 소유권의 증진(Promotion of national and local ownership) 등을 들고 있음.⁸⁾
- 과연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이러한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

P



8) UN, *UN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Resolution 1970 (2011)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491st meeting, on
26 February 2011**

The Security Council,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situation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and condemning the violence and use of force against civilians,

Deploring the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epression of peaceful demonstrators, expressing deep concern at the deaths of civilians, and rejecting unequivocally the incitement to hostility and violence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made from the highest level of the Libyan government,

Welcoming the condemnation by the Arab League, the African Union,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f the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are being committed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Taking note of the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Libyan Arab Jamahiriya dated 26 Februar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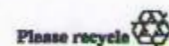
Welcoming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HRC/RES/S-15/1 of 25 February 2011, including the decision to urgently dispatch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to investigate all alleg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to establish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such violations and of the crimes perpetrated, and where possible identify those responsible,

Considering that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attack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Expressing concern at the plight of refugees forced to flee the violence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Expressing concern also at the reports of shortages of medical supplies to treat the wounded,

* Second reissue for technical reasons (10 March 2011).



Recalling the Libyan authorities'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

Underlining the need to respect the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of expression, including freedom of the media,

Stressing the need to hold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for attacks, including by forces under their control, on civilians,

Recalling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under which no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may be commenced or proceeded with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a period of 12 months after a Security Council request to that effect,

Expressing concern for the safety of foreign nationals and their rights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Reaffirming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unity of the Libyan Arab Jamahiriya.

Mindful of it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Demands* an immediate end to the violence and calls for steps to fulfil the legitimate demands of the population;
2. *Urges* the Libyan authorities to:
 - (a) Act with the utmost restraint, respec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llow immediate access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s;
 - (b) Ensure the safety of all foreign nationals and their assets and facilitate the departure of those wishing to leave the country;
 - (c) Ensure the safe passage of humanitarian and medical supplies, and humanitarian agencies and workers, into the country; and
 - (d) Immediately lift restrictions on all forms of media;
3. *Requests* all Member States, to the extent possible, to cooperate in the evacuation of those foreign nationals wishing to leave the country;

ICC referral

4. *Decides* to refer the situation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since 15 February 2011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5. *Decides* that the Libyan authorities shall cooperate fully with and provide any necessary assistance to the Court and the Prosecutor pursuant to this resolution and, while recognizing that States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have no obligation under the Statute, urges all States and concerned regional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Court and the Prosecutor;
6. *Decides* that nationals, current or former officials or personnel from a State outside the Libyan Arab Jamahiriya which is not a party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at State for all alleged acts or omissions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operations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established or authorized by the Council, unless such exclusive jurisdiction has been expressly waived by the State;

7. *Invites* the Prosecutor to address the Security Council within two month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every six months thereafter on actions taken pursuant to this resolution;

8. *Recognizes* that none of the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referral, including expenses related to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in connection with that referral, shall be borne by the United Nations and that such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to the Rome Statute and those States that wish to contribute voluntarily;

Arms embargo

9. *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immediately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Libyan Arab Jamahiriya, from or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of arms and related materiel of all types, including weapons and ammunition, military vehicles and equipment, paramilitary equipment, and spare parts for the aforementioned, and technical assistance, training,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related to military activities or the provision, maintenance or use of any arms and related materiel, including the provision of armed mercenary personnel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and decides further that this measure shall not apply to:

(a) Supplies of non-lethal military equipment intended solely for humanitarian or protective use, and related technical assistance or training, as approved in advance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4 below;

(b) Protective clothing, including flak jackets and military helmets, temporarily exported to the Libyan Arab Jamahiriya by United Nations personnel, representatives of the media and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workers and associated personnel, for their personal use only; or

(c) Other sales or supply of arms and related materiel, or provision of assistance or personnel, as approved in advance by the Committee;

10. *Decides* that the Libyan Arab Jamahiriya shall cease the export of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such items from the Libyan Arab Jamahiriya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ged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ibyan Arab Jamahiriya;

11. *Calls upon* all States, in particular States neighbouring the Libyan Arab Jamahiriya, to inspec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law of the sea and relevant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reements, all cargo to and from the Libyan Arab Jamahiriya, in their territory, including seaports and airports, if the State concerned has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cargo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s 9 or 10 of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12. *Decides* to authorize all Member States to,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upon discovery of items prohibited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Security Council**Distr.: General
17 March 2011**Resolution 1973 (2011)****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498th meeting, on
17 March 2011***The Security Council,**Recalling* its resolution 1970 (2011) of 26 February 2011,*Deploring* the failure of the Libyan authorities to comply with resolution 1970 (2011),*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deteriorating situation, the escalation of violence, and the heavy civilian casualties,*Reiter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ibyan authorities to protect the Libyan population and *reaffirming* that parties to armed conflict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take all feasible step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ivilians,*Condemning* the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s, enforced disappearances, torture and summary executions,*Further condemning* acts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committed by the Libyan authorities against journalists, media professionals and associated personnel and *urging* these authoriti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outlined in resolution 1738 (2006),*Considering* that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attack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Recalling* paragraph 26 of resolution 1970 (2011) in which the Council expressed its readiness to consider taking additional appropriate measures, as necessary, to facilitate and support the return of humanitarian agencies and make available humanitarian and related assistance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Expressing its determination*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nd civilian populated areas and the rapid and unimpeded passage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safety of humanitarian personnel,*Recalling* the condemnation by the League of Arab States, the African Union,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f the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11-26839 (E)



Please recycle

Taking note of the final communiqué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f 8 March 2011, and the communiqué of the Peace and Security Council of the African Union of 10 March 2011 which established an ad hoc High Level Committee on Libya,

Taking note also of the decision of the Council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of 12 March 2011 to call for the imposition of a no-fly zone on Libyan military aviation, and to establish safe areas in places exposed to shelling as a precautionary measure that allows the protection of the Libyan people and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Taking note further of the Secretary-General's call on 16 March 2011 for an immediate cease-fire,

Recalling its decision to refer the situation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since 15 February 2011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stressing* that those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attacks targeting the civilian population, including aerial and naval attacks, must be held to account,

Reiterating its concern at the plight of refugees and foreign workers forced to flee the violence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welcoming* the response of neighbouring States, in particular Tunisia and Egypt, to address the needs of those refugees and foreign workers, and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ose efforts,

Deploring the continuing use of mercenaries by the Libyan authorities,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a ban on all flights in the airspace of the Libyan Arab Jamahiriya constitute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s well as the safety of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 decisive step for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Libya,

Expressing concern also for the safety of foreign nationals and their rights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Welcoming the appointment by the Secretary General of his Special Envoy to Libya, Mr. Abdel-Elah Mohamed Al-Khatib and supporting his efforts to find a sustainable and peaceful solution to the crisis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Reaffirming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unity of the Libyan Arab Jamahiriya,

Determining that the situation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continues to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 *Demands* the immediate establishment of a cease-fire and a complete end to violence and all attacks against, and abuses of, civilians;

2. *Stresses* the need to intensify efforts to find a solution to the crisis which responds to the legitimate demands of the Libyan people and *notes* the decisions of the Secretary-General to send his Special Envoy to Libya and of the Peace and Security Council of the African Union to send its ad hoc High Level Committee to Libya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dialogue to lead to the political reforms necessary to find a peaceful and sustainable solution;

3. *Demands* that the Libyan authorities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and take all measures to protect civilians and meet their basic needs, and to ensure the rapid and unimpeded passage of humanitarian assistance;

Protection of civilians

4. *Authorizes* Member States that have notified the Secretary-General, acting nationally or through regional organizations or arrangements, and acting in cooper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notwithstanding paragraph 9 of resolution 1970 (2011), to protect civilians and civilian populated areas under threat of attack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including Benghazi, while excluding a foreign occupation force of any form on any part of Libyan territory, and *requests* the Member States concerned to inform the Secretary-General immediately of the measures they take pursuant to the authorization conferred by this paragraph which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5.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in matter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bearing in mind Chapter VI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quests the Member States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to coope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4;

No Fly Zone

6. *Decides* to establish a ban on all flights in the airspace of the Libyan Arab Jamahiriya in order to help protect civilians;

7. *Decides further* that the ban imposed by paragraph 6 shall not apply to flights whose sole purpose is humanitarian, such as delivering or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ssistance, including medical supplies, food, humanitarian workers and related assistance, or evacuating foreign nationals from the Libyan Arab Jamahiriya, nor shall it apply to flights authorised by paragraphs 4 or 8, nor other flights which are deemed necessary by States acting under the authorisation conferred in paragraph 8 to be for the benefit of the Libyan people, and that these flights shall be coordinated with any mechanism established under paragraph 8;

8. *Authorizes* Member States that have notified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cting nationally or through regional organizations or arrangements,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e ban on flights imposed by paragraph 6 above, as necessary, and *requests* the States concerned in cooperation with the League of Arab States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measures they are taking to implement this ban, including by establishing an appropriate mechanism for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6 and 7 above,

9.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acting nationally or through regional organizations or arrangements, to provide assistance, including any necessary over-flight approvals,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paragraphs 4, 6, 7 and 8 above;

10. *Requests* the Member States concerned to coordinate closely with each other and the Secretary-General on the measures they are taking to implement

발 표 2

중동 민주화 운동의 확산과 국제사회의 역할

-리비아 사태의 근본적 배경-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본질적 원인과 배경



- 연료, 식품 등 물가 상승
- 생활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튀니지 노점상 분신자살)
- 장기집권 및 세습 시도: 이집트, 예멘, 리비아 (시리아 2000년 세습 성공)
- 부패에 대한 불만 폭발: 집권세력의 정치권력 및 경제이권 독점
- 정치적 탄압: 비상계엄법, 정당정치 제한, 언론장악 등
- 재스민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시민의 자신감 확산

2

사회적 배경



- 낮은 사회유동성
 - 왕족, 군부의 기득권 유지
 - 신분변동의 어려움
 - 부족, 집안, 가문, 연줄에 의한 신분상승
-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
 - 개방물결에도 보수성향 유지하려는 세력의 반발
 - 남성주도 가부장적 사회, 여권신장의 목소리 나오기 시작
- 낙천적 성격
 - 기후, 종교적 원인에 의한 노동의욕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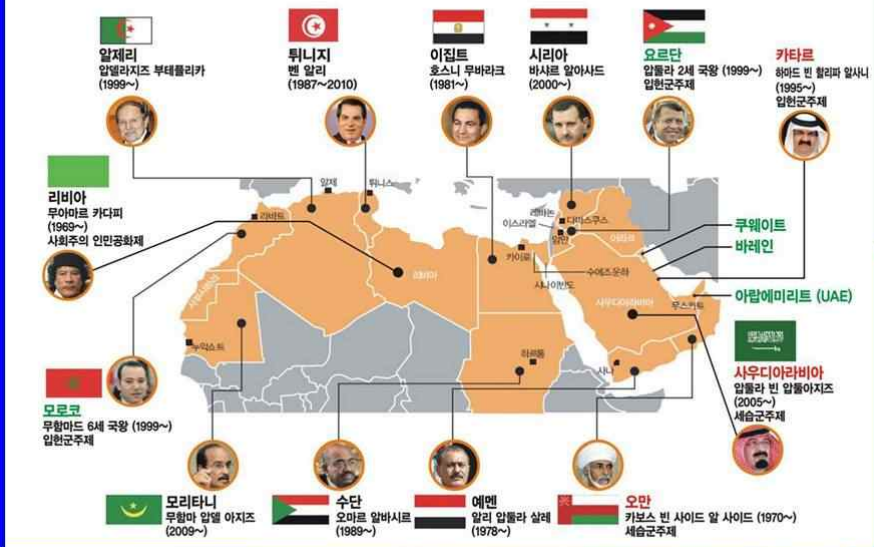
3

확산 과정 (3월 말 기준)

- 12월 17일 튀니지 노점상 부아지지 분신자살
- 1월 초 알제리, 튀니지 물가고로 인한 시위 발생
- 1월 14일 벨알리 망명
- 1월 25일 이집트 반정부 시위 시작
- 1월 26일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정부 반대 시위 발생
- 1월 30일 수단 반정부 시위 시작
- 2월 06일 이라크, 인프라 확충 요구 시위 시작
- 2월 11일 무바라크 하야, 예멘 대규모 시위 시작
- 2월 10일 모로코 시위 시작
- 2월 13일 바레인 시아파 시위 시작
- 2월 14일 이란 반정부 시위 시작
- 2월 15일 리비아 반정부 시위 시작
- 2월 17일 사우디 동부 시아파 소규모 시위 발생; 현재 내전상황
- 2월 말 오만 800명 평화적 시위, 지부티 장기집권 반대 시위 시작, 쿠웨이트 유목민 시위
- 3월 초 UAE 직접선거 등 개혁요구
- 3월 14일 바레인 사태 주변국 군사적 개입 시작
- 3월 18일 권력세습 공화정 시리아 내 시위 시작
- 3월 19일 서방의 대리비아 군사적 개입 시작
- 3월 말 시리아, 예멘 등 반정부 시위 가열, 정권 버티기 작전 돌입

4

중동에 부는 민주화 바람



5

중동의 정치형태



6

중동 사태의 변화과정



- 튀니지, 이집트의 시민혁명: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개혁 운동
- 리비아, 예멘의 부족 간 갈등 양상: 시민혁명 + 부족주의의 결합
- 바레인의 종파간 갈등
- 사우디, UAE 등 GCC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
- 내부의 개혁 요구 지역적 갈등으로 관심 돌리려는 정치적 전술
- 서방의 대리비아 군사개입
- 알카에다 위협의 정치화: 예멘 사태

7

리비아 사태 일지(4월 초 기준)



- 2월 15일 리비아 반정부 시위 시작, 카다피 정부 즉각 강경진압 시작; 용병 투입
- 2.20 반정부 시위 트리폴리로 확산
- 2.21 리비아 정부, 전투기 헬기 동원 진압
- 2.26 사임 법무, 내무장관 주도 국가위원회 설립
- 3.5 국가위원회 첫 회의, 유일한 대표 선언
- 3.12 아랍연맹, 비행금지구역 설정 지지
- 3.17 유엔 안보리 비행금지구역설정
- 3.18 대통령 최후통첩
- 3.19 파리회담, 다국적군 공격개시
- 3.24 리비아 반군 주도 임시정부 출범
- 3.26 카타르 공군, 리비아 공습 참여
- 3.29 런던회담 '리비아연락그룹' 결성 합의; '출구 전략' 가동
- 3.30 무사 쿠사 외무장관 사임, 영국 행
- 3.31 "오바마, 반군 지원 비밀계획 승인"
- 3.31 "카다피 특사 영국 방문"
- 4.1 반군, 조건부 정전안 제시; 리비아 정부 거부

8

리비아 사태



- UN의 국민보호책임 첫 적용 사례 논란
-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
- 군사작전은 적정성 논란
- 지상군 투입 가능성 논란
- 반군 무기지원 가능성 논란
- 미국의 군사적 역할 최소화 노력: 장기화 가능성
- 프랑스 영국의 조기 수습 노력: 단기화 가능성
- 아랍 국가의 군사작전 참여
- 동,서부 분할 가능성 고조: 1991년 이라크 상황 유사
- 난민 유럽유입 문제: 8만 리비아, 30만 북아프리카
- 반정부세력 임시정부 출범
- 중단기적 유가 상승 압박

9

성격: 아랍판 프랑스 혁명



- 단순한 독재정권 타도를 넘어 사상혁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한 남성중심 권위주의 인식체계의 변화: 물리력에 약한 속성에 충격
- 이슬람적 권위주의체계와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 (Islam = 순종 혹은 복종)
- 인식체계와 멘털리티 변화로 아랍권 전역으로 확산 (카타르만 예외)
- 리비아 사태를 계기로 부족 간 갈등으로 비화 (예멘, 알제리, 걸프 왕국 등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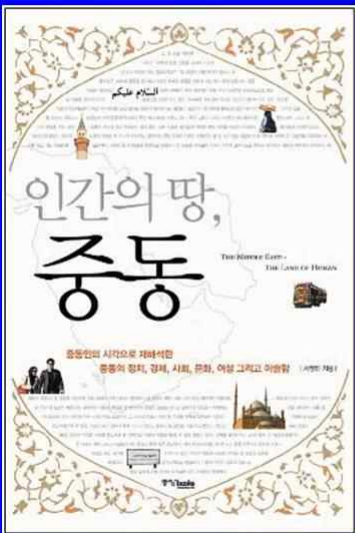
10

중동의 불안정 요소

국명	통치자 (나이, 집권년도)	불안정 지수*	부패순위 (178개국 중)	절대 빈곤층 (%)	평균 연령 **	청년층 실업 (%)	식자율 (%)
예멘	살리흐 (64, 1978)	86.9	146	41.8	17.9	15	61
리비아	카다피 (68, 1969)	71	146	n/a	24.2	n/a	88
이집트	무바라크 (82, 1981)	67.6	98	16.7	24	42.8	66
시리아	바샤르 (45, 2000)	67.3	127	n/a	21.5	24.4	n/a
사우디	K.압둘라 (87, 2005)	52.8	50	n/a	24.9	n/a	n/a
알제리	부테플리카 (73, 1999)	51.3	105	22.6	27.1	17.1	73
요르단	K.압둘라2세 (49, 1999)	50.3	50	14.2	21.8	n/a	92
튀니지	벤 알리 (74, 1987)	49.4	59	7.6	29.7	30.4	78
모로코	K.무함마드VI(47, 1999)	48.2	85	19	26.5	17.1	56
바레인	K. 하마드 (61, 1999)	37.7	48	n/a	30.4	19.6	91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54, 2005)	n/a	146	n/a	26.3	25.1	82

출처: *EIU Shoe-Thrower's Index from the Economist,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0 corruption index (higher number = greater corruption), World Bank, CIA World Factbook, UN (** Median age) and BBC | 1

성격: 알-카에다는 없었다!



- 이슬람의 이념이나 과격주의 운동이 개입하지 않음
- 시민혁명의 이슬람화라는 우려는 지나친 이슬람 공포증임
- 수니파 1400년 역사에 단 한 차례도 종교가 권력 위에 올라선 적이 없음
- 이슬람 정당의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 확대 예상
- 그러나 터키의 정의개발당 모델로 같 것임
- 이슬람 종교의 렌즈로 중동을 보려는 시각 주의필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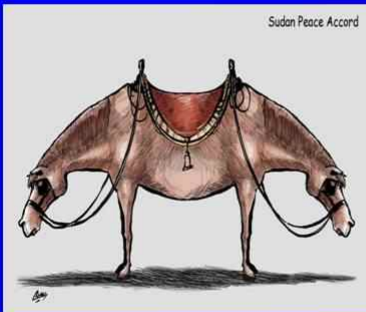
성격: 21세기 시민혁명의 모델 제시



- SNS를 통한 풀뿌리 민주화 운동의 성공적 모델 제시
- 리더가 없는 혁명 (최근 타중동국가 는 조직하는 단체가 등장하고 있음)
- 히드라와 같은 SNS: "손바닥 안에 들어온 첨단통신기술로 권위주의 정권의 목에 비수 겨냥"
- 09.06 이란 불공정 대선 항의 여대생 네다의 사망
- 정부는 인터넷, 무선통신망 차단 방식으로 대응
- 중국서도 재스민 혁명 선동 글에 중국 당국 긴장

13

파급효과: 중동의 질서 재편



- 이란의 영향력 강화: 이란 군함 2척 수에즈 운하 통과; 터키와의 정상회담; 시리아와의 합동군사훈련 합의
- 이집트와 사우디의 역할 당분간 축소
- 아랍권의 분열, 각국의 이익 추구 현상
- 카타르와 UAE의 역할 부상
- 역내 종파간 갈등 고조: 3.14 GCC 연합군 바레인 파병
- 이-팔분쟁의 중재 한동안 어려운 상황
- 걸프와 북아프리카의 양분화 현상: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

14

미국과 서방에의 영향



- 시위성격 반미화 가능성 있어: 팔레스타인 2.25일을 분노의 날로 지정; 정착촌 건설 규탄 유엔안보리 결의안 표결 미국 거부로
- 미국의 영향력 판도 재편: 대중동 정책 를 변화할 것; 아래로부터의 혁명 미국의 통제 능력 발휘되지 못해
- 이집트, 바레인, 리비아 사태에서 미국의 딜레마 나타나: G2→G0?
-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이집트, 사우디 등 친미국 가 역할 감소
- 오바마, 이상에서 현실, 실용으로; 2009년 대이슬람 화해책 변화
- 동맹국의 붕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이익 영향: 바레인 등
- 군 전력에 타격: 수에즈 운하, 이집트 영공, UAE와 카타르 비행장, 바레인 함대, 쿠웨이트 미군 보급기지

15

시민혁명의 향후 전망1



- 장기화할 중동의 시민혁명: 혼란과 시행착오, 추가적 정권붕괴, 점진적 개혁
- "시민혁명에는 성공했으나 민주화 과정은 이제 시작일뿐"
- 민주화 경험 미미, 시민사회의 역할 부족, 부족 간 갈등, 종파주의
- 민주화 이념보다는 독재종식, 부패청산, 기본권향상, 삶의 질 향상 등 실용적 요구
- 주변국가의 학습효과: 확산 저지 노력
- 비산유국의 경제회복 능력 부족
- 이슬람 종교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서방의 지속적 개입

16

시민혁명의 향후 전망2

- 국가별 상이한 변화 발생: 모든 정권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
- 대안세력의 부재로 신권위주의 등장 가능성 높아: 중앙아시아의 색깔혁명
- 리비아: 국제사회 개입 하에 점진적 안정화 가능성
- 이집트: 군부지배연합 체제
- 걸프왕정: 점진적 변화 가능성 증대,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 적어
- 이란: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국가, 급진적 반정부 운동 가능성 적어
- 예멘: 부족 간의 갈등 장기화
- 시리아: 다양한 변수에 의거 진행



17

안보리 결의 1973

- 즉각적인 교전 중단,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 및 잔학행위의 완전한 종식
- 민간인보호 위해 리비아 영공에서 모든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 확립; 유엔 아랍연맹 허가시 가능
- 어떤 형태로도 외국 군대의 점령 배제; 민간인 거주지역 보호를 위한 회원국들의 모든 필요한 조치 승인
- 리비아에 대한 자산동결 및 무기금수
- 15개국 중 BRIC + 독일 기권
- 해석 상의 모호성: 군사적 개입을 위한 명분이라는 비난



18

국제사회의 역할 논란



- 2005년 9월 유엔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민보호책임
- 반인륜적,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민보호 공동책임
- 주권보다는 인권을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원칙
- 2008년 짐바브웨, 미얀마 사태, 최근 코스타리카 사태에는 적용하지 않아
- 이종жат대 논란: 바레인, 예멘 야권도 국민보호책임 적용 요청
-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군사개입의 오남용 소지 있어

19

경제적 파급효과



-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은 적어, 석유수급 심리적 불안정으로 저강도 고유가 지속: 사우디 등의 증산능력, 각국의 개혁노력(학습효과), 미국의 사태 진화노력 가속화
- 사우디 등 주요산유국 불안정시 배럴당 220달러 이상 도달 (노무라증권)
- 수에즈 운하 주변 정세 불안
- 석유를 차지하는 국가 주도형 중동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 과거의 성장보다는 분배 기조 강화
- 상인정신 바탕으로 한 무역보다는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 민족주의적 상품 확대

20

중동 경제구조의 변화



- Rentier Economy (지대추구형 경제) 구조의 변화
- 석유 수입을 장악한 국가주도형 경제구조의 변화
- 석유가스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다각화, 노동력 자국인화 가속화할 전망
- 중동의 경제개발과 제조업 발전 실패의 최대원인이었던 상업주의의 약화: 5천년 동안 주로 무역에 의존한 민족
- 제조업보다는 장사, 무역, 사재기에 의존한 기존 관행 약화 전망
- 정부주도의 산업투자 외에 민간의 투자 부진 극복 노력
- 공급주도의 경제개발이라는 투기성 사업의 감소

21

우리의 대응방안: 대중동 전략



- 장기화할 중동 민주화 사태
- 상설 태스크 포스 팀 가동
- 신속적인 주재원 보호 조치
- 중장기 대중동 전략 재정립 필요
- 다원화한 정치 및 경제체제 등장: 시위 발생 원인도 다양; 섬세한 외교 및 진출 필요
- 포괄적인 대중동 전략보다는 '쌍무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필요성 증가; 맞춤형 외교 필요
-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외교 필요성: 문화원 설치, ODA 기금 적극 활용,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 로비가 아닌 경쟁력 갖춘 플랜트 수주 전략 필요: 기업의 과다경쟁 자제

22

P

NOTES

주권과 인권, 서방의 리비아 개입의 딜레마

-인도적 개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가능한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4차 전문가포럼